##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284

발의연월일: 2025. 4. 30.

발 의 자:이개호·민형배·위성곤

서삼석 · 천하람 · 조인철

부승찬 • 황명선 • 어기구

정진욱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타재가급여에 대해 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는 기타재가급여를 용구의 제공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방문재활은 장기요양급여에서 제외되고 있음.

따라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신체적·인지적 기능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방문재활 치료는 장기요양급여로써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함으로써 재활이 필요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재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물리치료 사와 작업치료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노인의 건 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종류로 방문재활을 신설함(안 제23조 제1항제1호라목 신설).
- 나.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재활을 제공하는 경우 방문재활의 관리책임자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도록 함(안 제31조제5항).
- 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 대상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추가함(안 제52조제4 항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사목(종전의 바목) 중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한다.

라. 방문재활: 장기요양요원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재활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또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31조제5항 중 "둔다"를 "두고, 방문재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재활의 관리책임자로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둔다"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중 "방문간호지시서"를 "방문간호지시서 및 방문재활지시서"로 하고, 같은 조 중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을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을 "제23조제1항제1 호다목 및 라목"으로, "방문간호지시서"를 "방문간호지시서 또는 방문재활지시서"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문간호지시서"를 "방문간호 지시서·방문재활지시서"로 한다.

제52조제4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 사

제58조제2항 중 "방문간호지시서"를 "방문간호지시서 및 방문재활지시 서"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1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라. 방문재활 : 장기요양요원
	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사가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
	재활지시서"라 한다)에 따
	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
	문하여 신체의 교정 및 재
	<u>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u>
	료 또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
	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제
	<u> 공하는 장기요양급여</u>
<u>라.·마.</u> (생 략)	<u>마.•바.</u> (현행 라목 및 마목
	과 같음)
<u>바.</u>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u>사.</u>
일상생활 •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	
에 필요한 용구를 <u>제공하</u>	<u>제공하는</u>

- 2. · 3. (생략)
- ② (생략)
-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제1호 가목에서 <u>마목</u>까지의 재가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 공하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통합재가서비스"라 한다)를 제 공할 수 있다.
- ④·⑤ (생 략)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7 ~ ④ (생 략)

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설치·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⑥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바목
~ ④ (현행과 같음) ⑤
두고, 방문재활을 제 공하는 경우에는 방문재활의
관리책임자로서 물리치료사 또 는 작업치료사를 둔다. ⑥ (현행과 같음)

등의 지원을 하는-----

제42조(<u>방문간호지시서</u> 발급비용 제42조(<u>방문간호지시서 및 방문</u>의 산정 등) <u>제23조제1항제1호</u> <u>재활지시서</u> 발급비용의 산정 <u>다목에 따라 방문간호지시서를</u> 등) <u>제23조제1항제1호다목 및</u> 발급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비 <u>라목------방문간호지시서</u>용부담방법 및 비용 청구·지 <u>또는 방문재활지시서------</u>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u>------</u>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 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장 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 또 는 의사소견서 · 방문간호지시 서 발급비용(이하 "의사소견서 등 발급비용"이라 한다)을 받 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 양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에 상당 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에 관하 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 조제2항을 준용하며, "보험급여 비용"은 "의사소견서등 발급비 용"으로. "요양기관"은 "의료기 관"으로 본다.

$\frac{1}{1}$
<u>재활지시서</u> 발급비용의 산정
등) 제23조제1항제1호다목 및
<u>라목방문간호지시서</u>
또는 방문재활지시서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u>방문간호지시서</u>
<u>• 방문재활지시서</u>

- 1. ~ 5. (생략)
- ② ~ ④ (생 략)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 ① ~ ③ (생 략)
- ④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신 설>

<u>3. · 4.</u> (생 략)

⑤ (생략)

제58조(국가의 부담)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b>4</b>
,
·
1.·2. (현행과 같음)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4.·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58조(국가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바므가중기치서 미 바므케하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제40조제2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 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 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③・④ (생 략)

지시서
<u>.</u>
③·④ (현행과 같음)